

한일 소방공무원의 인사제도 비교연구

이의평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Comparison Analysis on Personnel System of Fire Officers in Korea and Japan

Eui-Pyeong, Lee

Department of fire safety engineering, Jeonju University

요 약

한일 양국의 소방공무원의 신분, 계급체계, 신규채용, 승진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국가직소방공무원까지 있는 점에서 일본보다 신분제도면에서는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방사와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신규채용이 크게 2원화되어 있는데 비해 동경소방청은 모두 소방사로 채용하되 채용구분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며, 승진제도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객관화된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채용구분이 퇴직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일본은 채용구분을 매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인정제도를 두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인사제도를 개혁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1. 서론

우리나라 공무원제도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일본의 공무원제도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며, 소방공무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관련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소방공무원이 비슷한 제도 하에 있는 것으로만 막연히 알고 있지 소방공무원의 신분, 선발제도, 계급체계, 승진제도, 인재양성시스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일본 연수를 다녀온 소방공무원들이 일본의 소방 및 동경소방청에 대한 소개를 한 바는 적지 않으나 소방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구체적으로 보고하거나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한 사례가 거의 없는바 이 논문에서 일본소방을 대표하는 동경소방청 소방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동경소방청의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중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부분으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2. 한일 소방공무원 인사 제도의 비교

2.1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의 신분

우리나라는 국가에는 소방방재청, 지방은 광역자치단체에 소방본부, 소방서를 두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은 대부분의 지방직 소방공무원과 일부의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직, 지방직 소방공무원 모두 일률적으로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반면 일본은 소방관련 국가기관으로 총무성 산하에 外局 형태로 소방청(본청-123명, 소방대학교-소방연구센터 26명 포함하여 37명, 총 160명 정원임)이 있지만 모두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소방청 소속의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이므로 모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소방청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이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지방소방기관에서 사직하고 소방청에서 일정기간 임용하는 방식(기간이 끝나면 소방청을 사직하고 본래의 지방소방기관으로 다시 임용되는 방식)과 지방소방기관의 소속과 지방소방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출향(出向)'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소방청에 일정기간 파견되어 근무하는 방식이 있다. '출향(出向)'은 형식상으로는 지방소방기관의 요청에 의거 소방청이 승인하여 소방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제도로 주로 실무자급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지방소방기관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지방직 소방공무원만이 있을 뿐이며, 지방소방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은 갖고 있지 않다. 일본 소방공무원임용 등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일본 소방공무원의 선발 및 승진 등 인사제도는 소방본부(2007년 4월 1일 현재 807개 소방본부)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획일적으로 소방공무원 인사제도는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본은 소방조직법 제6조(시정촌의 소방책임)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정촌(市町村)에 소방책임이 있다. 시정촌에서 市는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市에 해당하며, 町村은 읍면동에 해당한다. 여기서 町村은 市에 속하지 않고 직접 都道府縣(우리나라의 市道에 해당함)에 속하는 町村을 말하며 지방의회를 갖고 있고 물론 소방본부도 있다. 일본소방에서 광역화란 우리나라 개념에서 광역화(광역자치단체의 소속)가 아니고 조그만 町村 규모로는 재정상 소방관서를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운영하더라도 災害對應力에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 조그만 町村이 연합하여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인근 큰 시에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광역자치단위 소방본부조직으로는 소방조직법 제26조(특별구의 소방책임)에 의거 東京都가 유일하다. 동경소방청은 소방조직법에서는 동경도(자치조직은 23특별구, 26市 및 수개의 町, 村, 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의 23특별구에 한해 규정하고 있고 동경도 산하의 나머지 市나 町村은 동경소방청에 위탁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도 東久留米市와 稻城市에서는 독자적인 소방본부를 갖고 있다.

동경도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인 47개 道府縣에는 소방국이나 소방본부, 소방과는 없으며 소방방재과 또는 방재소방과(방재계, 소방계 또는 보안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일반직 공무원임) 등이 있다. 48개 도도부현과 政令指定都市인 札幌市, 千葉市, 横浜市, 名古屋市, 京都市, 大阪市, 神戸市 및 福岡市の 8개 시에는 소방조직법에 의거 소방학교(동경소방청소방학교를 제외하고 소방학교장을 포함 전부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방공무원은 시정촌 소방본부소속으로 2년간씩 파견되어 교관만을 함)가 설치되어 있다.

2.2 소방공무원의 계급 비교

2.2.1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계급

우리나라는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에서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로 구분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소방정감, 지방소방감, 지방소방준감,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로 구분하고 있다.

2.2.2 일본 소방공무원의 계급

소방공무원의 법률상의 명칭은 소방리원(消防吏員)이다. 소방리원은 시정촌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직원 중 계급을 갖는 자를 말한다.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직원 중에는 소방계급을 갖지 않는 일반직공무원이 있다.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소방리원을 통털어 소방직원이라고 부르며, 계급이 있는 소방공무원만을 소방리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소방리원의 계급은 소방조직법에 기초하여 소방청장관이 정하는 消防吏員 階級の 基準 (1962년 소방청고시 제6호 旧題名인 「階級準則」 이 널리 통용되고 있음) 을 참고로 하여 시정촌의 규칙(동경소방청에 있어서는 東京都規則) 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이 계급준칙에 의한 소방리원의 계급제도는 소방총감, 소방사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사령장, 소방사령, 소방사령보, 소방사장, 소방부사장, 소방사의 10계급이 정해져 있다.

소방리원의 계급이 올라가는 것을 승급이라고 한다. 소방본부의 최고위자를 소방장(消防長)이라고 부르는데, 소방청의 계급기준에 의거하여 소방본부의 규모에 따라 소방장의 계급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인구 10만 미만의 소방본부의 소방장은 소방사령장의 계급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소방청의 기준은 단순한 참고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소방사령장보다 1계급 위의 소방감으로 하고 있다. 동경소방청에만 소방총감의 계급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방리원은 어디까지나 지방공무원이며, 주로 시정촌(또는 일부 사무조합, 광역연합)의 직원으로서 채용되지만, 동경소방청의 경우는 동경소방청이 채용을 하고 동경도(東京都)의 직원이 된다(동경소방청은 東京都廳의 내부기관으로 특별구 23구를 관할하며, 東久留米市와 稲城市를 제외한 多摩地区 각 市町村의 소방사무를 위탁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와 일본의 소방공무원 계급 비교

우리나라 소방계급과 직위		일본의 소방계급과 직위	
소방총감	청장	-	-
소방정감	차장	소방총감	동경소방청의 장(長)
소방감	국장	소방사감	동경소방청의 부장, 차장
소방준감	소방청 과장	소방정감	동경소방청의 부장
소방정	소방서장	소방감	소방서의 과장
소방령	소방서의 과장	소방사령장	소방서의 과장
소방경	소방서의 팀장	소방사령	대대장
소방위	119안전센터의 장	소방사령보	중대장
소방장	대원, 계원	소방사장	소대장
소방교		소방부사장	대원, 계원
소방사		소방사	

2.3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

2.3.1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법 제6조(신규채용)에서 지방소방사와 소방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신규채용과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신규채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고등고시)이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당해 시·도의 지방소방사계급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소방사와 간부후보생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시험의 방법)에서 신체검사(제1차시험)·실기시험(제2차시험)·필기시험(제3차시험)·면접시험(제4차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2.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구 분	제3차 시험과목
소방사·지방소방사공개경쟁채용시험	국어·한국사·영어·소방학개론·행정학개론

표 3.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분야별 구분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제3차 시험	필수 (5)	헌법·행정법·한국사·영어·소방관계법규	헌법·한국사·영어·자연과학개론·소방관계법규
	선택 (1)	행정학·민법총칙·형법·형사소송법·독어·일어·불어·중국어·러시아어·소방학개론 중 1과목	물리학개론·화학개론·화학공학개론·기계학개론·전기공학개론·통신공학개론·건축법규·소방학개론 중 1과목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표2>, <표3>과 같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시험의 방법)에서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표4>와 같이 신체검사·실기시험·필기시험·면접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표5>와 같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표 4.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방법

구분	내용
신체검사 (제1차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
실기시험 (제2차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체력 및 적성을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필기시험 (제3차시험 제4차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에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면접시험 (제5차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2.3.2 동경소방청의 신규채용 제도 - 소방공무원은 소방사만 공개채용¹⁾²⁾³⁾⁴⁾

동경소방청의 신규채용은 모두 공개경쟁시험(보통시험이라 함)에 의하며 소방공무원은 소방사만 선발(소방공무원이외에 일반직도 선발하고 있음)한다. 소방사만 선발해도 현재 세계적인 소방기관이 되어 있고 동경소방청에 인재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동경소방청의 경우 동경대학 등 일류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도 시험에 응시하고 있고 그들도 결코 쉽게 전문계(專門系)에는 합격할 수 없다는 게 정설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인재들이 갈 곳이 동경소방청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집 직급이 높은 것도 아닌데도 인재들이 오는 것은 열심히 근무하면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이지 않나 여겨진다.

소방사는 대학졸이상을 「專門系」로, 대학졸을 「Ⅰ類」, 전문대학졸을 「Ⅱ類」, 고졸을 「Ⅲ類」로 선발하고 있다. 관련규정으로는 동경소방청직원임용규정(제정-1986년 4월 1일 동경소방청훈령 제29호, 19차개정-2007년 1월 29)이 있다.

2008년도의 경우, 專門系 11명, Ⅰ류-768명, Ⅱ류-156명, Ⅲ류-386명을 선발했다. 專門系 및 各類 공통으로 1차 필기시험과 2차 신체·체력검사 등이 있다.

표 6. 專門系의 선발방법

과목	내용		
1차 시험	교양 시험	소방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일반교양에 대하여 대학졸업정도의 필기시험을 5지선다형(45문제 출제)으로 2시간 평가한다. 출제분야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지능분야 : 문장이해, 영문이해, 수적처리(數的處理), 공간개념, 판단추리 및 자료해석 ○지식분야 : 인문과학(국어, 국사, 지리), 사회과학(법학, 정치, 경제, 사회사정) 및 자연과학(수학, 물리, 화학, 생물)의 분야 중 현대사회에서 기초적인 교양으로서 필요한 것 및 사회생활을 통해 얻은 상식 등	
	전문 시험	소방행정사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초지식에 대하여 記述式(6문제 중 4문제 선택)으로 2시간 30분 평가한다. 각 전문구분의 출제범위는 대략 다음과 같다.	
		법률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친족·상속법을 제외한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건축	건축구조, 건축재료, 건축계획(도시계획을 포함), 구조역학, 건축사, 건축시공, 건축법규, 건축설비
		전기	전자기학, 전기회로, 전자기기, 전기응용, 송배전, 전기관계법규
		전자통신	전자기학, 전자회로, 정보처리공학, 전자계측, 전자기기, 전자물성, 통신
		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물리화학, 공업화학
		물리	물리수학, 전자기학, 역학, 열학, 광학, 양자역학, 상대론
		토목	토목시공, 토질공학, 구조역학, 콘크리트공학, 측량, 도시계획, 토목응용역학, 수리학, 토목재료
	기계	기계재료,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열기관을 포함한다), 기계공학, 기계역학, 기계설계	
논문 시험	과제식으로 1시간30분이다. (800자 이상 1200자정도)		
적성 검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에 대해 검사한다.		
2차 시험	신체·체력 검사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4지관절기능을 포함한다), 체력 및 건강도(노검사, 흉부X선검사를 포함한다)를 검사한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장 : 대략 160cm이상(여자는 155cm이상) ○가슴둘레 : 신장의 약 1/2이상 ○체중 : 약 50kg이상(여자는 약45kg이상) ○시력 : 교정시력을 포함하여 양눈 0.7이상이고 한눈 각각 0.3이상일 것 적색, 청색 및 황색의 색채를 식별할 수 있을 것 ○청력 : 좌우 모두 정상일 것(오디오미터를 사용하며 純音聽力検査에 의거 실시함) ○폐활량 : 대략 3,000cc이상(여자는 2,500cc이상) ○기타 : 1km달리기, 왕복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로 체력을 검사한다.	
	구술 시험	개인면접 및 집단토론을 실시한다.	

전문계의 전문구분은 법률, 건축, 전기, 전자·통신, 화학, 물리, 토목, 기계이며, 22세이상 30세미만이고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선발방법은 표6과 같다. 전문계는 물론 I류, II류, III류 모두 일본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경소방청직원은 응시할 수 없다.

I류는 22세이상 30세미만으로 대학졸업정도의 학력을 갖는 자(졸업예정자포함)로 1차 필기시험으로 일반교양에 대한 대학졸업정도의 객관식 시험과 논문시험, II류는 20세이상 30세미만으로 전문대학, 고등전문학교졸업정도의 학력을 갖는 자로 1차필기시험으로 일반교양에 대하여 전문대졸정도의 객관식 시험과 논문시험, III류는 18세이상 30세미만으로 고등학교졸업정도의 학력을 갖는 자로 하며 대학졸업학력을 갖는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1차필기시험으로 일반교양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정도의 객관식시험과 작문시험을 치러 합격해야 한다.

표6과 표7은 전문계, I류, II류, III류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정리하고 있다. 전문계 및 I류, II류, III류 모두 같은 소방사로 출발하지만 호봉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표8>과 같이 봉급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승진최소연수 등에 차이가 있다.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

표7. I류, II류 및 III류의 선발방법

과목		내용
1차 시험	교양시험	소방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일반교양에 대하여 I류는 대학졸업정도, II류는 전문대학 졸업정도, III류는 고등학교졸업정도의 필기시험을 5지선다형(45문제 출제)으로 2시간 평가한다. 출제분야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지능분야 : 문장이해, 영문이해, 수적처리(數的處理), 공간개념, 판단추리 및 자료해석 ○지식분야 : 인문과학(국어, 국사, 지리), 사회과학(법학, 정치, 경제, 사회사정) 및 자연과학(수학, 물리, 화학, 생물)의 분야 중 현대사회에서 기초적인 교양으로서 필요한 것 및 사회생활을 통해 얻은 상식 등
	논문시험	과제식으로 1시간30분에 걸쳐 I류 및 II류는 논문시험, III류는 작문시험을 치른다. (800자 이상 1200자정도)
	적성검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에 대해 검사한다.
2차 시험	신체,체력 검사	전문계와 동일함
	구술시험	개인면접을 실시한다.

모두 소방사로 최일선에서 소방공무원을 시작하므로 시스템적으로 누구나 현장의 업무를 경험하여 알 수 있으며 출발선이 다름으로 인한 갈등의 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출발선이 다름으로 인해 보이지 않은 갈등이 있는 우리나라 소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문계 및 I류, II류, III류의 채용구분별로 출발선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후술하는 것처럼 재직 중에 신규채용구분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면 채용구분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인정제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역제한이 없음은 물론 2008년도에는 지방 순회 설명회 3회(교토, 센다이, 후쿠오카)를 포함하여 7회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표8. 채용구분별 채용년도의 급여 및 기말·근면수당(2009년 기준)

구분	전문계	I류	II류	III류
급여(월)	약 252,000엔	약 243,000엔	약 223,000엔	약 205,000엔
기말·근면수당(연)	약 98만엔	약 94만엔	약 87만엔	약 80만엔

- 주)1.상기 외에 부양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이 조건에 따라 지급된다
 2.원하는 경우 독신기숙사(소방서 건물에 있음) 및 가족아파트가 제공된다.
 3.대학원졸업자 및 채용 전에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준에 따라 가산된다.

2.4 소방공무원의 승진제도 비교

2.4.1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승진제도

소방공무원법 제12조(승진)에 소방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며, 다만,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경력평정 등을 합산하여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승진심사대상자 명부에 든 대상자에 대해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을 결정하든지, 승진시험을 치러 시험점수와 근무성적·경력평정 등의 합산점수가 높은 대상자가 승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년수, 승진의 제한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근속승진 제도를 두고 있다.

2.4.2 동경소방청 소방공무원의 승진제도 - 능력검증에 의한 승진 제도

專門系로 채용된 자는 消防副士長, 消防士長은 근무성적평가와 체력심사로 승진하지만 消防司令補, 消防司令, 消防司令長까지는 누구나 예외 없이 승진시험과 근무성적평가 및 면접시험 등에 의해 승진이 결정된다. <표9>는 전문계의 소방사령이하의 승진시험자격 및 실시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I류, II류 및 III류로 채용된 자는 소방부사장부터 소방사령장까지 누구나 예외 없이 승진시험, 근무성적평가, 체력심사, 면접시험을 거쳐 승진하고 있으며 이들 절차 중 하나라도 생략하고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I류, II류 및 III류 채용자의 소방사령의 승진시험 및 합격 기준(동경소방청직원임용규정 제10조)은 <표10>과 같다. 소방사령장 이상의 승진시험자격 및 합격기준은 <표11> 및 <표12>와 같다.

표 9. 專門系의 消防司令以下の 昇進시험자격 및 실시 기준

구분	消防副士長	소방사장	소방사령보	소방사령
수험자격	근무소방사로서 2년 이상의 근무실적을 갖는 자	소방부사장으로서는 1년 이상의 근무실적이 있는 자	소방사장으로서는 1년 이상의 근무실적이 있는 자	소방사령보로서 3년 이상의 근무실적이 있는 자
징계	과거 1년 이내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합격결정	근무성적 및 체력심사		I류, II류 및 III류의 소방사령보 승진시험과 동일함	I류, II류 및 III류의 소방사령 승진시험과 동일함

표 10. 소방사장 승진시험자격 및 합격 기준

구분	A		B
수험자격	근무실적	소방부사장으로 1년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자	10년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자
징계	과거 1년 이내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시험방법	제1차	객관식 필기시험 1. 필수과목: 헌법, 행정법(기초이론), 지방공무원법, 소방법규, 일반교양 2. 선택과목: 경방, 방재, 구급, 예방, 지도홍보, 기계 6과목중 2과목 선택	1. 연수성적 2. 소논문
	제2차	1. 소논문 2. 면접심사(재해활동에 관한 구두시험을 포함) 3. 근무성적 및 체력심사	3. 근무성적 및 체력심사

표 11. 소방사령장 승진시험 및 합격 기준

구분	A	B	C	
수험자격	근무성적	소방사령으로서 6년 이상의 근무실적을 갖고 40세 미만인 자	소방사령으로서 10년 이상 또한 과장보좌급직에 있어 2년 이상 근무실적이 있고 50세 이상 58세 미만인 자	
	징계	과거 1년 이내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결정방법	제 1차	필기고사(논문) : 관리, 경방, 예방, 방재 및 구급의 각 부문 중에서 2문제 선택	필기고사(논문) : 관리, 경방, 예방, 방재 및 구급의 각 부문 중에서 1문제 선택	면제
	제 2차	필기고사(논문)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1문제	필기고사(논문)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1문제	필기고사(논문)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1문제
	제 3차	경력평정, 口頭試問, 인물고사		

표 12. 소방감(소방정)이상 승진 자격 및 결정방법

구분	소방감	소방정감	소방사감
자격	근무실적	소방사령장으로서 5년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자	소방감으로서 1년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자
징계	과거 1년 이내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결정방법	서류심사, 면접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외 없이 검증을 거쳐 승진하므로 계급에 걸맞은 실력을 갖추지 않은 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자가 소방서에서 계장이나 과장, 서장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으로 승진을 결정하면 거의 승진시험에 매달려 업무가 거의 마비될 지경이 되지만, 동경소방청에서는 이 폐단도 예측하여 승진시험만으로 승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필기시험은 필기시험의 합격, 불합격만 결정하며 그와 별개로 근무성적, 면접시험에 의거 최종 합격을 결정하므로 열심히 근무하지 않고 승진시험만을 잘 봐서 승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專門系로 들어온 사람이든 1류, 2류, 3류로 들어온 사람이든 열심히 근무하지 않고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승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신의 능력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승진되므로 승진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특히 소방사령장의 경우에는 2차시험까지 합격하여도 3차(면접-구두시험, 인물고사)시험을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한다. 3차시험은 동경소방청의 消防司監 모두(6명 : 차장겸 총무부장, 인사부장, 예방부장, 경방부장, 구급부장, 방재부장)와 1대1 면접이며, 소방사령장부터는 관리직이기 때문에 질문도 소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부터 시작해 부하직원 통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부를 많이 했던 운이 좋았던 간에 고등고시나 소방간부후보생 시험 등에 합격하면 공무원 재직기간동안 내내 당사자의 노력과 현재의 실력과는 별도로 고등고시 몇 회, 소방간부후보생 몇 기라는 것이 그대로 따라 다녀 당사자들로서는 더없이 좋은 제도일 수 있다. 그러나 말단부터 시작한 소방사출신들에게는 정말 억울하기 그지없는 제도일 수 있다. 동경소방청의 경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능력인정제도가 있다. 능력인정제도란 채용시험과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과 원칙적으로 채용시험과 동일한 수준의 시험을 실시하여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졸로 III類시험에 합격하여 소방공무원이 되었다더라도 야간대학이나 통신대학을 졸업하여 매년 1회씩 주기적(9월)으로 실시되는 전문계나 I류시험을 보아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계나 I류로 전환될 수 있다. 전문계의 경우에는 최초 선발시험과 마찬가지로 전문구분을 법률, 건축, 전기, 전자통신, 화학, 물리, 토목, 기계로 분류하여 응시한다. 하위직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3. 결론

한일 양국 소방공무원의 신분, 신규채용, 승진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국가직소방공무원까지 있다는 점에서 일본보다 신분제도면에서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신규채용은 우리나라는 소방사와 소방간부후보생으로 크게 2원화되어 있는데 일본은 모두 소방사로 채용되 채용구분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며, 승진제도에 있어 동경소방청이 우리나라보다 객관화된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방사와 간부후보생으로 2원화된 신규채용구분이 퇴직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동경소방청은 채용구분을 능력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인정제도를 두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동경소방청의 능력인정제도와 승진심사제도는 우리나라 소방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이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인사제도 발전의 기초자료가 되길 기원한다.

참고문헌

1. 동경소방청50년사, p.116-127(1998년)
2. 동경소방청총무부기획과 감수: 2008소방핸드북(제Ⅱ권 총무, 인사편), 재단법인동경소방협회, 2008
3. 2008년東京消防廳消防官(男性)採用選考案内, 東京都人事委員會, 東京消防廳
4. 이의평, 동경소방청의 인사제도 및 인재양성제도의 분석, 화재소방학회, Vol.22, No.4, pp.105-114, 2008